

2026년 음성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진계획

‘청년이 머무는 도시, 음성’ 실현을 위해 음성군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월세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진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음성군 청년정책 기본계획^(22.~26.)에 따르면 음성군 청년의 주된 주거 점유형태는 전·월세 50.8%, 자가 27.7%, 기숙사·관사 16.8%이며, 주거비 부담감에 대해 50%가 약간 부담 및 매우 부담으로 응답
- 청년의 주거문제는 혼인을 감소, 저출산, 경제활동 위축 등 지역 활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으로 사회진입을 도와 지역정착 유도

□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동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제15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5. 청년의 권리 보호

6.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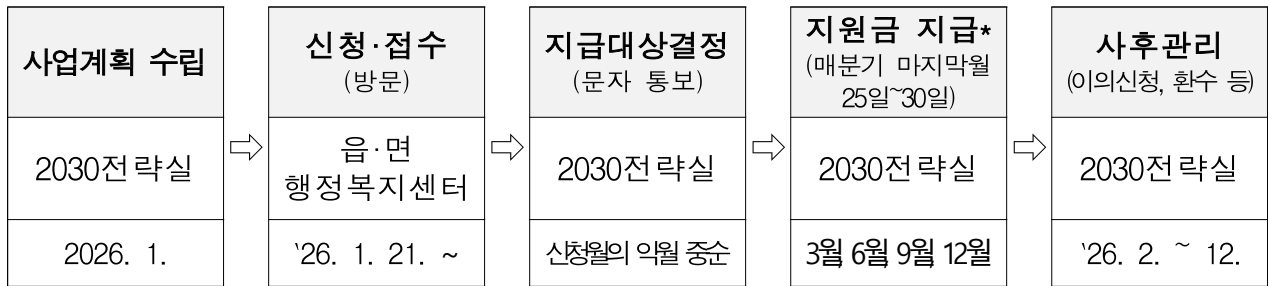
2 추진경과

- 민선8기 음성군 공약사업 확정 및 발표 '22. 8.
- 청년월세 지원 공약사업 추진계획 수립 '22. 9.
- 23년 음성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진 '23. 8. ~ 12.
 - (추진성과) 선정인원 총 53명 / 29,100천원 지급
- 24년 음성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진 '24. 1. ~ 12.
 - (추진성과) 선정인원 총 54명 / 106,786천원 지급(23년 선정인원포함)
- 25년 음성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진 '25. 1. ~ 12.
 - (추진성과) 선정인원 총 123명 / 179,400천원 지급(24년 선정인원포함)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26. 1. ~ 12.
 - (신청기간) '26. 1. 21.(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공고일 '26. 1. 16.(금)
- (총사업비) 225,000천원(군비100%, 135,000천원+주민참여예산90,000천원)
- (지원규모) 125명
 - (산출내역) 125명 × 150천원 × 12개월 = 225,000천원
-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지원내용) 매월 최대 15만원, 최대 12개월(회) 주택 월세 임차료 지원(생애1회)
 - ※ 실제 월세액 내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지급(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원대상) 자격요건, 주거요건, 소득요건 등 충족 대상자
- (지원방법) 월세 先 납부, 납부 증빙서류 확인 후 분기별 계좌 입금
 - (지급범위) 신청일 전월 납부분부터~12개월(회)
 - (지급시기) 매분기 마지막월(3월, 6월, 9월, 12월) 25일 ~ 30일경 지급

○ (추진체계)



* 지원금 지급 전, 월세 이체내역 및 주소변동 여부 확인 후 지급
(소득요건은 신청 시 종합조사 1회만 진행)

4 지원대상 세부요건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침’ 준용하여 판단 예정

□ 자격요건

○ (연령) 시행연도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 (2026년 기준) 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 선정 후 연령 초과 시 계속 지원

○ (주민등록)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음성군인 자(전입신고 필수, 부모님과 별도 세대)

□ 주거요건

○ 부모님과 별도로 음성군 관내에서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공공임대주택 제외)에 실제 거주하며 월세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동법 제4호에 따른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 임대차계약주소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함

- 부부·형제·자매·기타동거인 등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만 신청 및 지원
(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 소득요건

○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최근 3개월)

- 최근 3개월분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확인

※ 2025년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2025년 소득판정기준금액으로 적용

-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

- 기혼자는 배우자, 자녀를 포함하여 산정

▶ 2026년 기준 중위소득(100%)

(단위 : 원)

구 분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50%)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3,847,000	138,780	68,641	-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9인	17,151,000	634,423	628,429	712,921
10인	18,590,000	712,921	697,282	838,33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출처 충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소득요건) 자격에 따른 확인 사항

구분	소득이 있는 청년* (직장인, 자영업 등)	소득이 없는 청년** (학생, 무직자 등)	기혼인 청년으로 부부가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부부중 1명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소득조회대상	신청인(청년)	부양자(부모)	신청인(청년), 배우자
소득조회 가구원수 산정	1인	신청인(청년) + 부양자 (부모) + 피부양자로 등록된 소득이 없는 미혼 형제자매	신청인(청년) + 배우자 + 자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	1. 본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본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 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3. 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소득이 있는 청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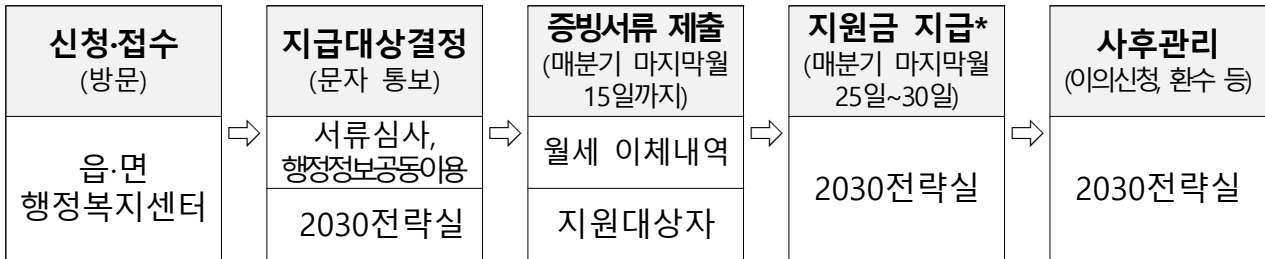
** 소득이 없는 청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 제외대상자

- 본인명의 주택 소유자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 거주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소유 주택 임차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국가(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및 타 지자체의 주거지원사업 대상자
- 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 2023년~2025년 음성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업무처리 절차에 따른 세부사항 안내

1 업무처리 흐름도



2 사업공고 및 대상자 모집

○ (사업공고) 음성군 홈페이지 공고('26. 1. 16. 예정)

○ (신청·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청년 본인 방문신청*

* 신청서류가 전부 갖춰진 자는 대리인이 방문 제출 가능

- (접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청년업무담당(총무팀)

- **읍면담당자** (접수 시) 신청자의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신청서에 접수일자 작성

○ (신청서류)

※ 공고일 이전 발급본 불인정

구분	서류명	유의사항	비고
①	신청서		서식1
②	서약서		서식1-1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신청서의 신청인 및 가족사항 제공자 모두 서명란 작성	서식1-2
④	월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임대인) 날인본 *해당 없을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발급 ▶기숙사의 경우 입실확인서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이 원칙이나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월세지급 등)을 통해 지원 가능	

구분	서류명	유의사항	비고
⑤	월세 납부내역서 (최근 1개월)	▶계좌이체 수령인으로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대인이 명시된 이체(송금)확인증 *수령인이 임대인이 아니어도 임대차계약서상 입금계좌가 동일하면 인정 ▶모바일 스마트뱅킹 어플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 캡처 이미지 ▶계좌이체 없이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일자, 계약기간, 월세납부금액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확인서) ▶기숙사의 경우 기숙사비 납부영수증	
⑥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과세기간 2025년 / 전국기준 / 세목 재산세 주택 ▶발급장소: 위택스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재무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기준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⑧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 명의	
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 및 가족구성원 동의 대상자 모두 서명란 작성	서식1-3

3 자격심사 및 대상자 선정

- **군** (서류심사) 세부요건(자격, 주거 및 소득요건) 확인
- **군** (타 사업 중복지원 여부 조회)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주거급여 수급 여부 확인
- **군** (최종선정) 대상자 선정 및 분기별 증빙서류 제출 알림 통지
 - 신청·접수월 기준 다음달 20일 이내 지원대상 여부를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
 - 통지 시 변경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안내, 변경신청의 경우에도 지원결정 및 통보 실시

- 소득요건은 신청시기에 건강보험료 관련자료의 종합조사 1회를 통해 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하며, 대상자 선정 후에는 주거요건변경·이체내역 확인 외에 소득요건은 추가 조사없이 지급기간 동안 월세지원 실시

- **군** (대기자선정) 접수 마감전 신청자 중 예산 초과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대기자로 선정하여 기존 선정자의 월세지원 중지 사유 발생으로 예산 잔액 발생시 지원대상자로 추가 선정

* (우선순위) 접수일자 → 나이가 많은 자 → 최근 관내연속거주기간이 긴 자 → 월세 금액이 높은 자

4 월세 지급 및 지급전 확인사항

- (지급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1인 최대 180만원(월 최대 15만원)까지 12개월(회) 동안 분기별 분할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급일) 매분기 마지막월(3월,6월,9월,12월) 25일 ~ 30일 사이 계좌입금
- (지급기준) 신청월 기준 청년이 전월에 기지출한 월세분에 대한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후지원 원칙

▶ 분기별 월세지원금 지급 범위

- (최초선정자) 신청일 전월 납부분부터~12개월(회)
- (1월 신청자) 전년도 12월 월세 지출분 포함 / (2월~이후 신청자) 신청월 전월 월세 지출분 포함
- (1분기) 전년도 12월분, 1월분, 2월분 / (2분기) 3월분, 4월분, 5월분 / (3분기) 6월분, 7월분, 8월분 / (4분기)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은 다음년도에 지급
- (대기선정자) 추가 선정월 납부분부터~12개월(회)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12개월분 지원

- (월세이체내역 확인) 선정된 대상자 개인별 월세이체내역 확인
 - 선정자는 매분기 3개월분 임차료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매분기 마지막월 15일까지 군 담당자 이메일 제출 / sevin0508@korea.kr)

- (지급 전 확인사항) 지원금 지급 전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및 변경 신청 여부 등을 확인
 - (계약 변경)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어 변경 신고한 경우 당월은 종전 계약대로 지급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은 다음 달부터 적용
 - (지원 중단) 확인 결과 지원중단 사실 발생 시 직권으로 중단 처리

5 선정취소, 월세지원 중지, 이의신청 및 환수

- (선정취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참여자가 신청 또는 선정 후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직권 취소 후 대상자 통보
- (월세지원 중지) 월세 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 다음 달부터 월세지원금 중지

- 주소지 등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고 그 이후 급여분부터 월세지원 중지 및 변경신청 안내 *변경 신청 시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재개

* 월세지원 중지 사유

- ①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③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 또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조사업자(시·군·구)가 확인한 경우
- ④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 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⑥ 지원대상자가 사망·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되거나 지원대상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 ⑦ 음성군 외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경우
- ⑧ 관내 주소지 이전, 계약갱신 등 계약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월세지원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서식2 변경신청서]
- ⑨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 ⑩ 임차료 계좌이체 내역 등 서류 제출 요구 3회 불응하는 경우

- 청년 가구의 주택 소유 등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청년)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지원 중지

○ (이의신청) 처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소득재산 등 재확인을 통해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 결과 통보

* 이의신청이 인용 결정된 경우 인용 결정시 인정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미지급된 지원금 전부를 지급

○ (환수) 월세지원금 과다지급이 확인된 경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환수절차) 사전통지 → 의견제출 → 환수결정·통지 → 이의신청 → 징수